

믿음직한 나의 평생 동반자



BNK경남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BNK 경남은행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별 특징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기업IRP	개인IRP
급여종류	퇴직소득을 개인형IRP로 과세이연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퇴직시		연금 : 만55세이상 및 연금수령 기간 5년이상 일시금 : 제한없음	
급여액	직전3개월평균 임금X근속기 간 (퇴직금제도와 동일)	매년임금총액X 1/12 ± 운용손익	퇴직급여 이전 금액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주체	기업	가입자		
개인추가 납입	불가	가능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 중도인출 사유 해당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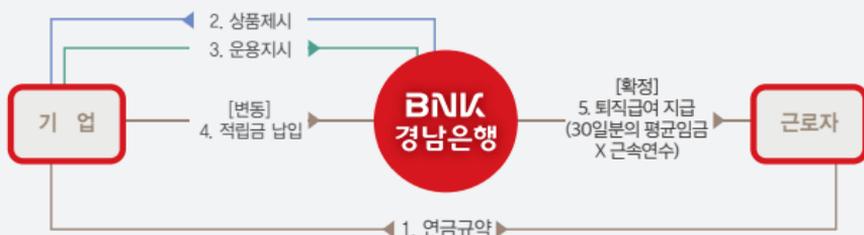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1.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추가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3.연차미사용 금품 4.상여금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1.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실비 변상적 금품 3.복리후생적 금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란?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 일수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중도인출 불가
- 매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재정검증* 실시

* 재정검증이란?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가입 사업장의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수준 이상인지 검증하는 절차

재정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재정검증결과	급여지급방식	조치사항
적립초과 I	급여 전액지급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적립초과II		150% 초과분에 대해 사용자 요청시 적립금 반환 가능
적정 I		-
적정II	적립 비율지급	-
적립부족 I		재정검증결과 근로자대표 통보
적립부족II		· 재정검증결과 근로자대표 ^{주)} 통보 · 최소적립비율 대비 부족비율의 1/30이상을 직전년도 종료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함

- 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 재정검증결과 적립부족 시 부족비율의 1/30이상을 직전사업년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란?



-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

※ 부담금 종류 및 납입시기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적립하는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개인부담금 두 종류로 구분됨.
- 사용자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1)으로 납입

※ 부담금 납입현황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및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부담금 지연납입 시 지연이자 발생 및 부담금 미납통지

지연이자: 퇴직 이후 14일까지 연10%, 14일 이후부터 납입일까지 연20%

미납통지: 부담금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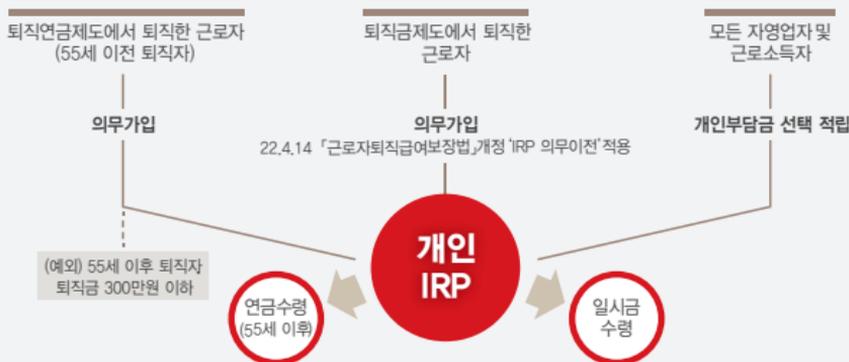
- 법정사유 충족시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기업IRP 제도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한 특례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운용되는 제도

개인IRP 제도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
 여를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가입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 등)
- 퇴직금을 수령한 자(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또는 퇴직금 수령예정자

• 개인부담금 납입한도

연 1,800만원^{주1)} + ISA^{주2)} 만기해지 연금계좌 전환금액 + 1주택 고령가구 다
 운사이징^{주3)}

주1) 전 금융기관 연금저축, DC/기업IRP/개인IRP 개인부담금 합산

주2)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3) 1주택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고,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

•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절세금액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	900만원	16.5%	최대 1,485,000원
총급여 55백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 ISA 만기해지 연금계좌 전환금액 1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중도인출/담보대출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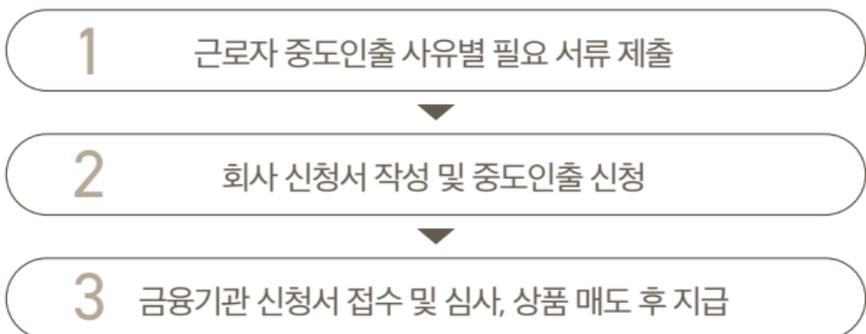
제도종류	중도인출	담보대출
확정급여형(DB)	불가능	시행불가
확정기여형(DC), 기업IRP, 개인IRP	가능	시행불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행은 담보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인 담보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 담보대출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정 중도인출사유**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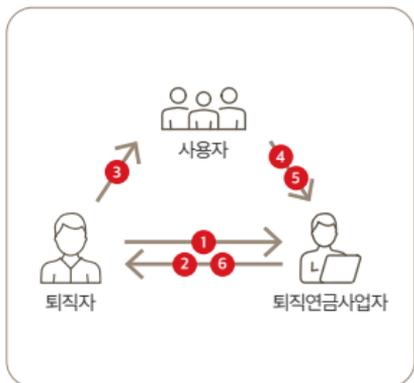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시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限)
- 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시 (가입자 연간임금총액의 12.5% 초과하여 의료비 부담한 경우)
- ④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퇴직연금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제공 후 대출받은 가입자가 대출금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중도인출 신청 프로세스**



퇴직급여 지급절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IRP로 의무이전 됩니다.



1. 개인IRP 가입
2. 개인IRP 통장 발급
3. 퇴직신청
4. 퇴직급여 지급신청
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송부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만)
6. 개인IRP 계좌에 세전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1. 가입자가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 폐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등 ▶ 개인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운용현황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등 ▶ 적립금은 가입자의 IRP계좌로 이전하고 근퇴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청구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 사업장 폐업·도산 등 기타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이야기 합니다.

• 퇴직연금 (폐업/도산 시) 미청구 적립금 청구

- 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폐업·부도·사실상 도산·사용자의 행방불명 등 사업장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퇴직급여 지급액
① 당해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DB : 금융기관 등록 추계액 x 적립비율 DC/기업IRP : 해당 가입자 적립금
② 퇴직급여청구자(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택1)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접속 후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메뉴 통해 조회 가능

퇴직연금 계약이전

회사가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후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 신고

1

규약 변경: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및 수리통보증 수령 (*기업IRP는 규약변경 생략)



2

계약이전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계약 체결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



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연금 제도 운영 (*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시행 (2021.01.04))

퇴직연금제도별 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퇴직연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 확정급여형(DB)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약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 (단, 공익법인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5%)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수수료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경남은행 관리점을 통해 신청 후 혜택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된 기업/단체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적용 불가함)

- ①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③ 강소기업: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④ 공익법인: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 ⑤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 발생 시 법적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할인 미적용)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 집

※ 기업IRP는 '가'목의 할인만 적용되며 향후 '나·다·라'목의 할인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2024.11.11기준)

• 집합투자증권 운용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수수료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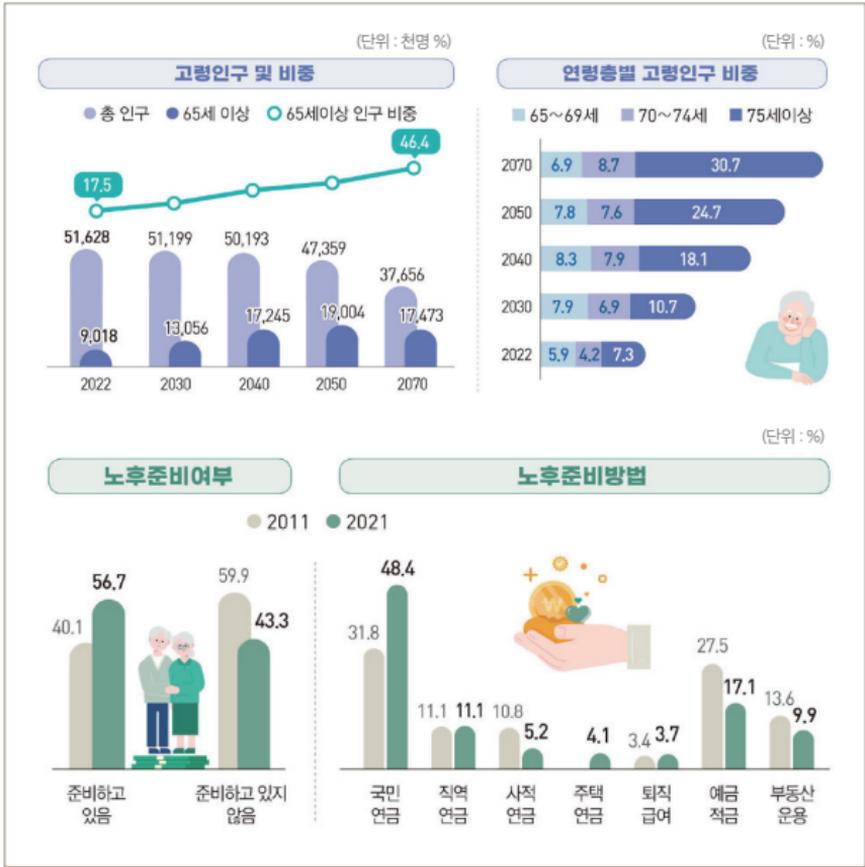
- DB,DC,기업IRP 적립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 기준일 전일까지의 집합투자증권의 평가액의 평균잔액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10% 할인해 드립니다.

• [개인IRP]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운용 손익에 따른 수수료 부과

- 개인IRP의 경우 디폴트옵션 저위험·중위험·고위험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운용손익수수료^{주)}'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주) '운용손익수수료'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외)로 운용되는 적립금의 운용성과가 포트폴리오별로 정한 기준지표의 운용성과를 상회하거나 하회함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되는 수수료입니다.

II. 노후설계 및 자산관리

노후설계 및 자산관리



(출처: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고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 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 초고령사회: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노후설계 및 자산관리

경제적 준비 없이 오래 사는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 별 발생하는 이벤트와 주요 재무목표를 사전에 고려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산·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기본적인 생활)·퇴직연금(안정적인 생활)·개인연금(여유로운 생활)의 3층 연금 구조를 활용하여 생산가능시기에 필요 노후자금에 대해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층(자기보장) - 여유로운 생활보장

은퇴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

2층(기업보장) - 안정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1층(국가보장) - 기본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

-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만 노후를 기댈 수는 없습니다. 견실한 노후설계를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의 일반적인 원칙

개별금융상품의 수익(Return)은 위험(Risk)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손실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대수익이 낮으면 그만큼 발생하는 위험도 낮아지게 됩니다.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운용 시 장기투자자와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면 위험은 줄이면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장기투자

주식·펀드와 같이 수익변동성(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장기간 투자하면 수익변동성이 줄어들고 투자수익이 재투자되어 복리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분산투자

- 투자시기의 분산 :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을 나누어 투자하는 적립식은 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쌀 때 많이”, “비쌀 때 적게” 매수할 수 있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투자대상의 분산 : 한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보다 위험과 수익 특성이 다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기대수익률을 높이는데 있어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방법

- 자산운용의 주체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
- 확정기여형(DC)/IRP : 가입자

- 자산운용방법



※ 운용방법 등록/변경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조회 및 변경 가능

퇴직연금 운용상품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또는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금융상품몰 -퇴직연금-퇴직연금상품 메뉴」를 활용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며 부담금 납입시 고시되는 이율을 적용하여 정해진 만기(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이더라도 은행별, 만기별 적용이율이 다양하므로 입금하시기 전 적용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수료와 별도로 펀드에서 정하는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환매수수료 등이 부과되며, 기준가격, 수익률, 기본정보 등은 경남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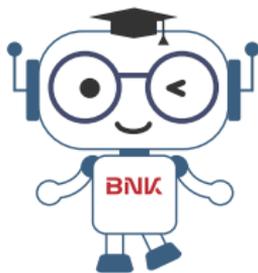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위험자산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웰스타로보(WealSTAR Ro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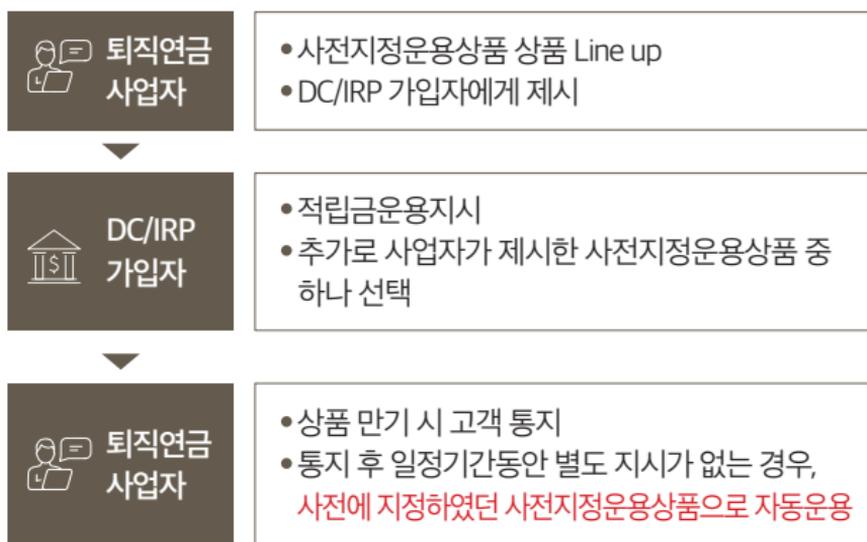
수익증권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상품 선정이 어려우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스타로보(WealSTAR Robo)가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금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여 드립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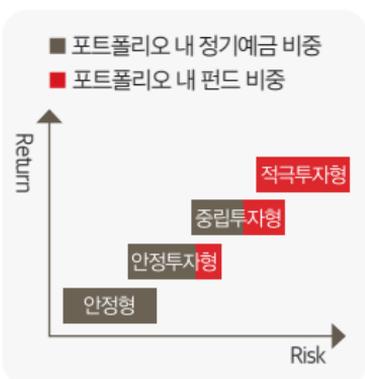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기업IRP 또는 개인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운용성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남은행 사전지정운용 상품(포트폴리오): 총 7개

- 경남은행 사전지정운용상품 안정형 포트폴리오
- 경남은행 사전지정운용상품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1
- 경남은행 사전지정운용상품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2
- 경남은행 사전지정운용상품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1
- 경남은행 사전지정운용상품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2
- 경남은행 사전지정운용상품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1
- 경남은행 사전지정운용상품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2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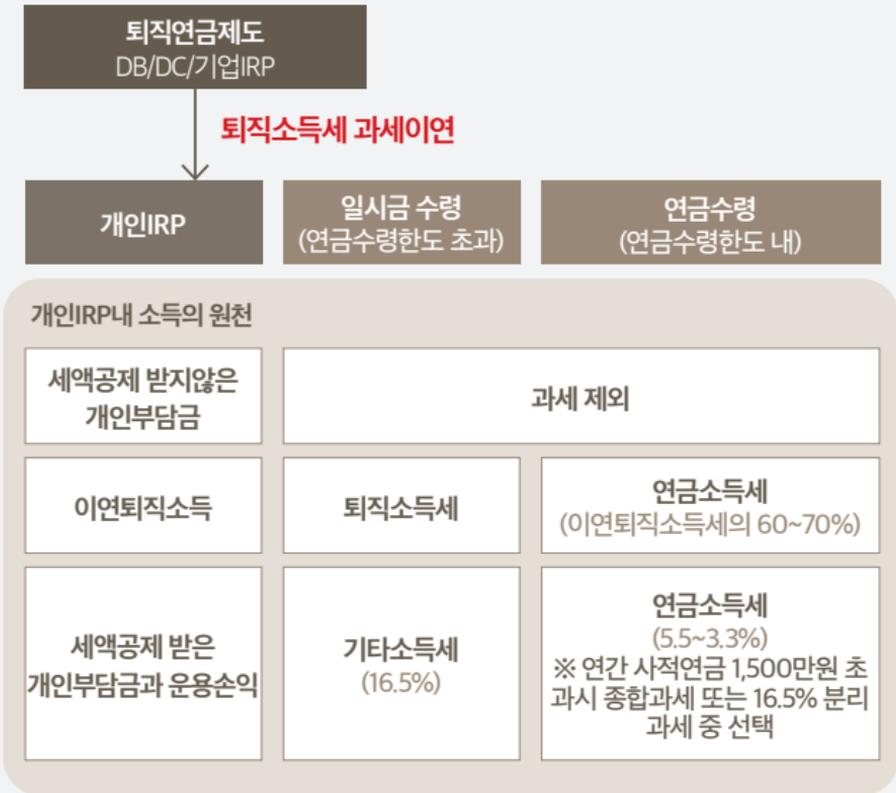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23.7.12부터 원리금 보장상품의 자동 재예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보장상품이 만기가 되면 현금성자산으로 상환되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이 현금성자산으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모든 DC/IRP 제도 가입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사전지정운용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지정하셔야 합니다.

III.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 단계에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일시금 수령/연금 수령)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연금개시일 또는 매년 1월1일의 연금계좌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or 관할세무서 민원실 발급)

- 일시금 수령시 과세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개인부담금과 운용손익은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합니다.

-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까지 퇴직소득세의 70%,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초과시 퇴직소득세의 60%로 과세 되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손익은 연령별 연금소득세* 5.5%~3.3%로 과세됩니다. 단, 연간 사적연금(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제외) 1,50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합산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령별 연금소득세 : 70세미만 5.5%, 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III.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는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①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②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한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중간정산 금액과 합산 과세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근속연수공제	①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별공제	②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환산급여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

홈페이지/인터넷뱅킹	www.knbank.co.kr
텔레뱅킹 번호	1600-8585/1588-8585
모바일뱅킹	앱스토어에서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검색

고객센터

금융상담센터	1600-8585/1588-8585(0번)
퇴직연금상담센터	055-290-8200
금융상담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고객불편상담센터

불편상담센터	080-590-8282
금융상담 이용시간	평일 09:00 ~ 17:0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동법 제 3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실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입니다.

가입자 교육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또는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상시 이수 가능합니다.